



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Ⅰ)

글/김 기 육(대한전기기사협회 기술실장)

1. 전기설비안전관리 연혁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나라 이 땅에 발전기가 들어온 것은 1887년 4월 왕궁인 경복궁에 “전기설비” 즉, “자가용 발전설비”가 탄생하여 아크등이 점등됨으로써 안전관리는 미국인 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정부에서는 규제나 제도를 두지 않고 있었다.

그 후 1898년 1월 18일 미국인 H. Collbran과 H.R. Bost Wick가 정부로부터 전기사업경영권을 얻어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여

전력사업이 최초로 시작되어 법적 근거없이 안전관리는 전력회사에서 전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옥내 배선공사, 수리, 전등교환까지 담당하였다.

1907년(명치 40년) 3월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기사업취제규칙”을 제정공포할 때는 6개 전력회사의 950kW 발전소 3개로 전기 사용자가 늘었고 전기안전관리 필요성이 부각되어 전기설비에 대한 행정 규제가 시작되어 전기사업자인 전력회사에 안전관리책임을 국한하여 인정하였다.

그 내용은 일본의 것 (1896년

체신성령 전기사업취제규칙)과 대동소이하다.

1932년(소화 7년) 2월 조선총독부는 제령 제1호로써 새로운 법체계를 정립한 “조선전기사업법”과 그 부속법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전기사업자에게 공익사업특권으로서 타인의 토지사용 등이 인정되는 동시에 안전관리책임 능력자로서는 “전기사업자”와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자를 인정하는 한편 그 기술을 담당시키기 위하여 “전기주임기술자” 제도를 탄생시켰다. 처음에는 “전기사업 주임기술자”로 사용하다가 “전기

주임기술자”, “보일러터빈주임기술자”와 “맵수로주임기술자”로 구분하였으며 자가용 전기공작물을 설치 규정이 제정되었고 “자가용 전기공작물”을 제1종 자가용 전기공작물과 제2종 자가용 전기공작물로 구분하여 제1종 자가용 전기공작물에는 전기주임기술자를 임의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제2종 자가용 전기공작물은 발전기가 있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전기주임기술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책임은 사업용은 사업자에게 있고 자가용 전기설비는 자가용 전기설비 설치자에게 있으며 일반용 전기설비는 전력회사에서 안전관리를하도록 되어있다. 전기 관계 업무는 통감부의 통신관리국 공무과에서 관장하였다.

그후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지만 법제를 마련할 수 없었던 형편이므로 조선전기사업령과 남조선 과도정부명령 제9호(비상시 전력 위원회) 등이 독립헌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해서 13년간 유효한 전기사업관계 규제법규로 남아 있게 되었다.

1961년 12월 31일에 비로소 우리의 전기사업법이 제정되었으나 이것은 5.16 혁명 직후 「구법령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1961. 7. 15 법률 제659호)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며 당시의 여건이 부득이 하여 조선전기사업령의 내용과 비슷한 것이 되고 말았다. 전기관계 업무는 상공부 동력국과 각 시·도

지사가 관장하였다.

1969년 4월에 상공부는 새로운 전기사업법의 연구를 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령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한전의 특별기구를 통하여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1973년 1월 30일에 동법안이 비상국무회의를 통하여 동년 2월 8일 공포된 후 동년 11월 1일부터 시행케 되었다.

이어서 2개 대통령령과 8개 상공부령 등의 부속법령들이 1974년 4월까지 제정·공포·시행되었다.

법의 특색으로는 사업규제에 있어서는 「안정된 공급력의 확보」에 중점을 두었고 보안규제에 있어서는 특정인에게 국한하지 않고 관련자 모두가 해당되는 「보안의 자주화」 내지 「보안의 사회화」를 기한 것으로 자주보안책임의 확립, 보안규정제도, 보안담당자 제도로서 자가용 전기설비를 확대하여 전기주임기술자를 의무적으로 선임, 겸임, 대행토록 하였다.

16년동안 여러번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려 하였으나 업·단체의 여러가지 상충되는 이유로 개정하지 못하였지만 정부(동력자원부)의 확고한 정신으로 안전관리를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어려운 진통은 있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이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14호, 동시행령은 1990년 8월 21일 대통령령 제13076호, 동시행규칙은 1991년 1월 24일 동력자원부령 제117호로 개정·공포·시행되었다.

이 법의 특색은 수십년간 사용하던 “전기공작물”을 “전기설비”로, “전기보안”을 “전기안전관리”

로 변경하였고 설비허가, 사용전 검사 범위확대, 정기검사 범위확대와 안전관리담당자의 자격여건을 대폭 강화하고 안전관리사와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 관리

가.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필요성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여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전기사용자의 이익보호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전기설비중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설치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영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되며 전기재해를 예방하고자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채용 선임, 또는 대행 선임하여 그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종류로는 전기·기계·토목분야에 각각 안전관리사가 있고 관리사 밑에 전

기·기계분야 관리원이 있다.

나.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시기 등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시기는 공사 착공전, 즉 공사계획전에 체용하여 “대한전기기사협회”의 기술자격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 받아 선임신고를 동력자원부, 각 시·도지사에 해야하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서를 검토하고 공사 발주 참여, 공사감독, 자체사용전 검사, 대외사용전검사, 자체정기검사, 대외정기검사 업무 등 전기설

비 안전관리 업무를 감독 또는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설비 종류별 또는 사업장마다 <표 1>에 의하여 그 소속직원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전관리사의 자격기준은 <표 2>와 같고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사의 직무를 분담 보조하기 위하여 선임도록 하였으며 안전관리원의 자격은 동일분야의 기능사 2급, 또는 기사 2급 이상으로 하였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사의 선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등에 있어서는 전기분야 기능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전기과 졸업자로서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영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면 군으로부터 제한받는 지역, 도서 또는 벽지에 설치된 전기설비 300kW 이하 어느 곳이든지, 100kW 발전기와 100kW 수용설비로서 합계가 200kW 이하인 전기설비, 또는 땅 높이 10m 이하의 소수력 발전소로서 용량 300kW 이하인 전기설비에 있어서 안전관리사로 선임될 수 있다. 여기서 “도서 또는 벽지”라 함은 시 이상의 행정구역, 시 이상의 도시 경계로부터 10km

<표 1>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 (설치공사를 위한 사업장)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사	안전관리원
1. 수력발전소	용량 10만kW 이상	전기1명	전기2명
	용량 10만kW 미만 ~1만kW 이상	토목1명	전기1명
2. 기력발전소 가스터빈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용량 50만kW 이상	전기1명	전기2명, 기계2명
	용량 50만kW 미만 ~10만kW 이상		전기2명, 기계1명
	용량 10만kW 미만 ~1만kW 이상		전기1명, 기계1명
	용량 50만kW 이상		전기3명
3. 송·변전설비 또는 동 설비를 관리하는 사업 장(소수력, 내연력발전 설비 포함)	용량 50만kW 미만 ~10만kW 이상	전기1명	전기2명
	용량 10만kW 미만 ~1천kW 이상		전기1명
	용량 1만kW 이상		전기3명
	용량 1만kW 미만 ~5천kW 이상		전기2명
4. 전기 수용설비(자가용 내연력발전설비 포함)	용량 5천kW 미만 ~1천kW 이상	전기1명	전기1명
	용량 1천kW 미만		
	~5천kW 이상		
	용량 1천kW 미만		
	~1천kW 이상		

이내의 지역, 읍행정구역과 공업, 농공단지내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다. 전기설비의 정의 및 종류

“전기설비”라 함은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 땜, 수

로, 저수지, 전선로, 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를 말하므로 발전을 하기 위한 수력발전설비(댐, 수로, 저수지), 화력발전설비, 원자력발전설비, 내연력발전설비, 가스터빈발전설비, 송전을 위한 송전설비, 변전을 위한 변전설비, 배전을 위한 배전설비,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 땜, 수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까지를 말한다.

여기서 전기수용설비는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로 구분하며 “수전설비”는, 타인의 전기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타인의 전기설비와의 책임한계점 으로부터 수전용 변압기가 있는

<표 2>

분야	자격 기준	안전관리범위	
전기	전기 안전 관리사	1.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2. 전기기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전기기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전기적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전압 10만볼트 미만의 전기적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1. 열원동기, 유체기계, 건설기계 기술사 자격소지자 2. 기계기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기계기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기력설비·가스터빈사용 원동력설비 및 원자력설비(원자력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적 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압력 60킬로그램 매제곱센티미터 미만의 기력설비·가스터빈 사용원동력설비 및 원자력설비(원자력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적 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토목	토목 안전 관리사	1. 구조, 시공기술사 자격소지자 2. 토목기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토목기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수력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적 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높이 70미터 미만의 댐·압력 6킬로그램 매제곱센티미터 미만의 도수로·서지탱크 및 방수로 기타의 수력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적 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표 3>

대상	사실(적용)기준	관계법
○ 화약류 제조하는 사업장	○ 화약, 폭약, 화공품을 써서 폭약을 제조하는 곳(장난감용 꽂불은 제외)	○ 총포, 도검, 단속법 제2
○ 갑종탄광: 석탄광산	○ 배기쟁도의 가연성 가스 함유율이 0.25% 이상인 것 ○ 체탄작업장의 가연성 가스 함유율이 1% 이상인 것	○ 광산보안법 시행령 제4조
○ 도시가스사업장 ○ 액화석유가스의 저장 충전 및 판매장 ○ 위험물의 제조, 저장장소	○ 수용자에게 연료용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 ○ 액화가스충전, 집단공급, 판매 저장하는 사업 ○ 고압가스제조, 저장, 판매를 하는 사업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6조 별표 2
○ 소방법 관련 위험물의 제조소 등	○ 1일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발화성, 인화성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제조시설, 취급시설, 저장시설)	○ 소방법 제14조 시행령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경우에는 1차 변압기 이후의 분기용 차단기 또는 개폐기의 개로시 전원측까지를 말하며 수전용 변압기가 없는 경우에는 분기용 차단기 또는 개폐기의 개로시 전원측까지를 말한다.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발전기 이후의 1차 차단기 또는 개폐기로 부터 수전용 변압기가 있는 경우에는 1차 변압기 이후의 분기용 차단기 또는 개폐기의 개로시 전원측까지 말하고 수전용 변압기가 없는 경우에는 분기용 차단기 또는 개폐기의 개로시 전원측까지를 말한다. 분기용 차단기 또는 개폐기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 차단기 또는 개폐기로 한다.

“구내배전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의 배전반(변압기 2차측 분기용 차단기 전원측 단자) 이후부터의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 개폐기, 차단기, 변압기, 분전함, 콘센트, 제어반, 스위치, 기타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즉, 종전의 “전기공작물”은 전기를 발생하기 위한 저수지, 댐, 수로를 포함하여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등 사용설비(부하설비)까지를 말하였으나 개정된 “전기설비”에서는 사용하기 위한 설비(구내배전설비)로 국한시키기 때문에 종전의 부하설비인 전등, 전동기 등이 배선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도 전기설비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러므로 부하설비인 전동

기, 전등, 전열기 등 생산을 하기 위한 설비는 사업장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받아 그 법에서 정한 산업안전관리 체계에서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전기안전관리에 있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책임한계로서 전기사업법상의 책임한계는 분명히 전기설비에 국한시키고 난 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용설비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안전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기설비”的 종류로는 사업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로 분류된다. 자가용 전기설비는 사업용 전기설비와 일반용 전기설비를 제외시킨 모든 전기설비를 말한다.

<표 4>

대상	사실(적용)기준	관계법
○ 공연장 : 영화관, 연극장, 연예장 (음악회장, 무용회장), 서커스장	○ 공연에 공연하는 장소 및 시설	○ 공연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부표 15항
○ 집회장 : 공회장, 시민홀, 예식장	○ 회의 사고 등을 목적으로 공중이 집회할 수 있는 건축물	○ 소방법시행령 별표1항 건축법 시행령 부표1항 15호
○ 카바레, 나이트클럽, 댄스홀 등 이에 분류되는 곳	○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 및 음료 수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영업, 유흥 점객업	○ 식품위생시행령 제17조 1항
○ 헬스클럽(체력단련장업)	○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 치, 경영하는 업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1
○ 시장	○ 일정구역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 에 설치된 점포시설에도 소매업 자 및 이를 지원하는 용역업자가 상품을 매매,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	○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 상점가	○ 일정범위안의 가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소매업 점포, 또는 용역점포, 또는 용역 점포가 접근하여 있는 지구	○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 도매센터	○ 매장면적이 3,000m ² 이상인 곳	○ 도·소매업진흥법 제11조
○ 대규모소매점 : 백화점, 쇼핑센 터, 대형점	○ 백화점, 소핑센터 매장면적 - 서울 : 3,000m ² 이상 - 기타 : 2,000m ² 이상 ○ 대형점 매장면적 - 서울 : 1,000m ² 이상 - 기타 : 700m ² 이상	○ 도·소매업진흥법 제11조
○ 병원 :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 병원	○ 입원환자 2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 ○ 시행령 제2조의 2
○ 호텔 :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 텔, 유스호스텔, 해양관광호텔, 콘도미니엄	○ 객실이 30실 이상인 곳 ○ 1객실 바닥면적 - 양식 : 9m ² 이상 - 한식 : 7m ² 이상	○ 공중위생법 제2조
○ 예식장 : 예식장, 장례식장	○ 혼례 및 장례의 식장을 제공하는 영업	○ 가정의례에 관한 법 : 법률 시행 령 제8조
○ 지정문화재 : 보물, 국보, 사적	○ 문화재보호법에 대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 문화재 보호법 제2조
○ 기타(복합건물)	○ 병원 공연장 등의 장소가 공용되 는 전기설비	

라. 자가용 전기설비의 범위

- (1) 수전전압이 600V를 초과한 전압(고압 이상)의 전기설비는 1kW 라도 자가용 전기설비이고 수전전력 75kW 이상의 전력을 수전하여 동일구내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 (2)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구내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용량에 관계없이 자가용 전기설비에 포함된다.

(3) 폭발성 또는 인화성 물질이 있어 전기설비에 의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많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30V 이상의 전압과 용량에 관계없이 자가용 전기 설비로 규정하였으나 민원이 야기되고 사업장의 어려운 여건으로 동자부에서는 20kW 미만에 한하여 임의 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 (가)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은 제외)을 제조하는 사업장
(나) 광산보안법에 의한 갑종탄광

- (다)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 가스사업법의 저장, 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 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 저장장소

- (라)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등 관련법은 <표 3>과 같다.

(4) 용량 20kW 이상의 전기 설비는 다음과 같다.

- (가) 극장, 영화관, 관람장, 연예장 등 공연장, 집회장 또는 공공회의장

- (나) 카바레, 나이트클럽, 댄스홀, 헬스클럽 기타 이에 분류되는 곳
(다) 시장, 대규모 소매점(백화점) 도매센터, 상점가, 예식장, 병원 또는 호텔 관련법은 <표 4>와 같다.

(5) 사업용 발전설비를 제외한 30V 이상의 모든 발전설비로서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 일명 구내발전설비라 한다.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에서 제외되는 전기설비가 있는데 그 이유는 타의 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고 독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기 규제법규가 있어 안전에 관하여 본 법에서는 손댈 필요가 없거나 본래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으로써

(1) 특정 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댐 및 저수지와 선박·차륜·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2) 전압 30V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V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않는 것

(3)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수전설비는 제외)

여기서 “전기설비”란 인공적으로 노력을 가하여 토지 등에 고정시킨 설비를 말한다. 따라서 자연그대로의 하천을 수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하천은 전기설비가 아니며 물 그 자체도 전기설비가 아니다. 그리고 발전소, 변전소 등은 종합적 설비로서도 전기설비이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의 기구, 기계도 설치된 상태로는 전기

설비이다. 그러나 전선 등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기계, 기구는 전기설비가 아니다.

마.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해임 신고

전기안전관리사와 전기안전관리원을 신규 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에 있어서 선임신고만 하고 폐지 전기설비는 해임신고만 한다. 즉, 이 나라 이 땅에 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가 있는 한 전기 안전관리담당자는 존속해야 된다.

기술 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는 해임신고와 선임신고를 동시에 해야 하며 기설 수용가에 후임자가 없을 경우는 대리자를 지정한 후 지정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해임신고할 수 있다. 여기서 대리자 지정기간은 법적으로 15일이며 기간내 다른 안전관리사 또는 안전관리원을 선임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자의 자격은 안전관리원은 고등학교 전기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해당분야 기능자격소지자, 기타 등급 직위 이상의 직급에 있는자로 할 수 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사가 여행,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기간은 30일이내이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신고의 의무는 사업주, 즉 설치자, 소유자, 점유자이며 실제적으로 신고 행위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

가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 신고 절차순을 살펴보면 전기안전 관리담당자 선·해임 확인을 대한 전기기사협회에서 받아야 한다.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국가기술자격증과 수첩사본, 경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에, 퇴직자는 경력 증명서(담당업무명기), 재직자는 재직증명서(담당업무명기), 앞으로 5년이 경과되면 대한전기기사협회서 발급하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경력확인 서류를 첨부하면 되고 대행의 경우에는 대행계약서 사본과 개인별 대행사업장 관리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 등에 있어서는 졸업증명서를 첨부한다.

대한전기기사협회에서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 확인은 모두 해당되므로 전기사업자,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 등의 채용 또는 대행 계약된 분야별 안전관리사, 분야별 안전관리원, 안전관리보조원이 되기 때문에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행사업체에 소속된 자 모두 포함된다.

대한전기기사협회에서는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기사 1급은 해당경력 3년 이상, 기사 2급은 해당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며, 2급 전기안전관리사는 10만V 미만의 전기설비 인지, 또한 이중취업 여부를 확인한다.

여기서 안전관리사 자격기준의 해당분야 실무경력 산정기준은 전기안전관리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확인서류에 의거 확인한다. 예를 들면 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된 경력자는 경력증명서와 수첩기재사항이 있으면 되고 수첩을 개신하였을 경우에 공사계획신고필증 사본이나 사용전검사필증 사본 등 그 회사에 전기설비가 있었다는 증거서류가 있어야 된다. 기사수첩을 개신할 때는 사본을 해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전기공사업체에 근무한 자는 경력증명서와 공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종합소득세신고 사본 등이 필요하다.

여기서 해당자격 취득 후 경력 기간이 100%를 적용받는 것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담당자, 보조, 검사, 겸겸자, 공무원법에 의한 전기직렬에 보직된 자로서 전기에 관한 업무,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시공관리 업무,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중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업무 및 발전, 전기관련 병과를 받은 기간, 협회와 같이 전기기술 사무 및 연구업무, 관련법에 의한 전기설비를 설계한 경력이고, 해당자격 취득 후 80%를 적용받는 경력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겸사업무, 소방설비공사 업무, 산업안전관리 업무, 전기계량에 관한 업무, 공무원법에 의한 통신직렬(전자포함)에 보직된 자의 업무, 관련법에 의한 전기분야 교육직 업무, 건설관계법에 의한 시공관리 업무, 전기기계·기구의 제작 또는 수리 업무이다.

또한 해당 자격 취득전 경력은 50%를 적용하며 그 경력은 전기

설비 안전관리보조, 겸사, 점검 업무와 공무원법에 의한 전기직렬에 보직된 자로서 전기에 관한 업무만 해당된다.

대행하는 자의 안전관리사에 대하여는 규모별 사업장 개수의 적정여부 점수가 60점 이하인가 확인하고 대행사업체 등록된 행정구역내인가의 여부, 설비용량이 1,000kW 미만, 예비발전전기용량 300kW 미만인가를 확인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사에 대하여는 도서, 벽지인 경우에 300kW 미만 확인, 경력 및 학력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할 때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선·해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반려한다.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 신고는 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허가된 전기설비는 동력자원부 전력국 전력운영과에 신고하고 공사계획신고 대상인 설비는 해당 시·도지사에 신고한다. 신고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또한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법제정 취지는 민원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우편으로 하도록 하였다. 선·해임 확인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한전기기사협회를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 확인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선·해임 신고를 받은 해당관청에서는 신고필증을 5일이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호에 계속…>